#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90

발의연월일: 2021. 7. 7.

발 의 자:김경만·강선우·김수흥

김영배 · 김홍걸 · 문진석

민형배 · 양기대 · 이규민

홍기원 · 홍성국 · 황운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업상속 공제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적용하면서, 시행령에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요건, 가업영위기간 및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법인의 경영자 27%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가업승계가 이미 우리 경제에 닥칠 현실이나, 과중한 세부담 등으로 인해 가업을 포기할 수 있으므로, 가업승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법인: 50%→40%, 상장법인: 30%→20%)하는 한편, 상속인의 가업종사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사후관리의무기간(7년→5년)과 업종유지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업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신설, 제18조제6항, 제18조제7항 단서 신설, 제18조제9항 등).

#### 법률 제 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을 "주식"으로 한다.

- ③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 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

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제18조제7항(종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마목1) 중 "7년간"을 "5년간"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7년간"을 "5년간"으로 한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 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내에서 가업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 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제18조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10항(종전의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본문 중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로,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를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를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0항제2호"로, "말일(제6항제1호라목"을 "말일(제7항제1호라목"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본문 중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를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로 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업상속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초공제)	1 • 2	(생	제18조(기초공제) ①・② (현행과
략)			같음)
<u> &lt;신 설&gt;</u>			③ 가업상속은 피상속인 및 상
			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
			에 가업상속 당시 제22조제2항
			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
			자자(이하 이 조에서 "최대주
			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
			<u>니한다.</u>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
			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
			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
			의 100분의 40[「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 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 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 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 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 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 우로 한정한다)
  -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기간
-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본다.

<u>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u> 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 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 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 까지의 기간 중 법률에 따 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 의 요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업에 종 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 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 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 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 <u>③</u>·<u>④</u> (생 략)

-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u>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u>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 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 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 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 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 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 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

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
임할 것
<u>④·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u>⑥</u> <u>제4항</u>
<u>주식</u>
<u>⑦</u>
<u>5년</u>

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이상을 처분한 경우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서 신설>

	·
1	
가.	<u>100</u>
	분의 20
나.	
-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
-	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내에서 가업의
-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 • 라. (생 략)

- 마. 다음 1) 및 2)에 모두 해 당하는 경우
  - 1)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 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 에 미달하는 경우
  - 2)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말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u>7년간</u>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 2. (생략)
- ⑦ (생 략)
-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 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u>본다.</u>
다.ㆍ라. (현행과 같음)
마
1)
<u>5년간</u> -
2)
5년간-
<u> </u>
2. (현행과 같음)
8 (현행 제7항과 같음)
<u>③</u> (현광 제7광의 끝급) ⑨ 제7항
<u> </u>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①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7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로 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2. (생략)

①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

<u> </u>
<u>5년</u>
,
1.•2. (현행과 같음)
<u>①</u>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
<u>제7항 각</u>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10항제2
<u> </u>
말일(제7항제1호라목

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 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 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 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 만,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 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6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 「소 득세법」 제97조의2제4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이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한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
① 제7항 또는 제10항제2호